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54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장기간 국내에 체류한 6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2

I. 개요

1.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645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해철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6. 1. 30.
- (3) 회 부 일 : 2026. 2.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인 가입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과 유사하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러한 규정에 따라 외국국적동포 가입자는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였더라도 내국인 가입자와 달리 노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제능력이 없는 외국국적동포 65세 이상의 가입자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기간 국내에 체류한 6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로서 ① 외국국적동포일 것, ②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③ 65세 이상일 것,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또는 그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⑦ (생략)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7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⑧ -----제10항-----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 또는 그 외국인이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가입자일 것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⑩ 공단은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제9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한정한다)이 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제5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6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규정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 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 동포¹⁾인 외국인일 것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 체류자격²⁾을 부여받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4. 65세 이상일 것

5.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

-----.

-----.

⑪ -----
-----제10항-----

-----.
-----.

⑫ 제11항-----

-----.

⑬ 제9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

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75조 및 그 하위법령³⁾에 따라 보험료 경감제도가 운영되

-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는 외국국적동포에게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3)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법 제75조제1항제1호에서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
 - 가. 군 및 도농복합 형태 시의 읍·면 지역
 - 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역 중 동(洞)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지역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가입자
 2.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 제45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 나.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다.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 라.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사람

고 있어 섬·벽지에 거주하는 가입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농어업인 등, 군부대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인 군인,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인 지역가입자,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직장가입자, 그 밖에 재난 등으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등은 보험료가 일부 경감됨.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

경감유형		적용요건	경감률(%)
농어촌 지역		농어촌 거주 지역가입자	22
섬·벽지		섬·벽지 거주 지역가입자	50
		섬·벽지 근무·거주 직장가입자	
농어업인 (농림부·해수부 지원사업)		농어촌거주 농어업인	0~28
취약세대	65세 이상 노인, 70세 이상 노인, 한부모, 조손가족, 55세 이상 여자 단독, 소년·소녀가정, 만성질환, 장애인·국가유공자	소득월액 30만 원 이하, 재산과표 13,500만 원 이하	10~30
	사업장화재·부도·경매 등	사업장화재·부도·압류·경매 진행	
재난경감		특별재난지역 거주 세대, 재난 등급 또는 피해금액 발생 (3~6개월)	30~50
요양기관 이용 제한지역 경감		경감대상 지역의 군인	20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사업장 화재 등 경감		사업장 화재, 부도, 수해 등의 피해 발생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	30
휴직자 경감		직장가입자 중 휴직자	50 (육아휴직자 최저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 경감		퇴직 전 1년 6개월 중 합산 1년 이상 직장 근무자	50

자료 : 보건복지부

- 영 제45조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가입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법 제7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 법 제7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 중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
- 법 제7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가입자

□ 특히, 현행법 제75조제1항제2호(65세 이상인 사람)에 따른 보험료 경감과 관련하여, 65세 이상인 지역가입자가 있는 세대의 경우 연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 보험료가 경감되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약 2,616억원의 보험료가 경감되었음.

< 최근 5년간 65세 이상을 사유로 경감된 보험료 규모 >

(단위: 천 세대, 억 원)

연도	경감 세대수	경감 보험료
2025년	7,457	416
2024년	6,988	395
2023년	6,718	422
2022년	7,419	644
2021년	7,265	739
합계	35,847	2,616

주1) '25.12월 기준 65세 이상 경감 세대 발체

주2) 경감요건(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소득월액 30만원 이하)을 충족한 세대에 한하여 재산과표별 10~30% 경감률 적용

주3) 경감 세대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에 한하여 경감 적용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한편, 현행법 제109조제9항4) 본문은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법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법 제75조에 따른 보험료 경감도 준용될 수 있으나,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⑨ 제7항과 제8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69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다르게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25)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해서 체류자격 및 소득금액·과표재산 등을 고려하여 경감하도록 하거나 섬·벽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경감하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해당 고시에서 ‘65세 이상’은 보험료 경감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와 같은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6).

□ 이에 개정안은 외국국적동포인 외국인으로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이후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인

5)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별표 2]

지역보험료 산정 기준(제6조제1항 관련)

5. 공단은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에서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경감한다.
가. 세대주인 가입자의 체류자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보험료 경감고시」 별표 2에 따른 소득금액 및 과표재산은 같은 별표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각각 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경감

1)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70

나)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60

다) 2023년 3월 분 이후의 월별 보험료: 100분의 50

2) 체류자격이 종교(D-6)인 경우: 100분의 30

3)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재외동포(F-4)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1) 가)부터 다)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호의 학교(같은 법 제29조의 대학원 및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체류자격이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인 경우: 100분의 30

나. 영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다. 영 제45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규칙 제46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해당 세대별 보험료액의 100분의 22를 경감

6. 제5호에 따라 경감하는 사유가 2 이상인 경우 경감액은 각각의 경감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합한 금액이 해당 세대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넘는 경우 100분의 50(가입자가 제5호가목 1) 또는 3)에 해당하여 경감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경감률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6) 이한숙, 마음속 혐오를 끄집어내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복지동향 2023.2.

“법령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지침에 의한 깨알 같은 차별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그 주요 내용만 짚어보 고자 한다. (중략) 다섯째, 유학, 종교, 인도적체류자 등 일부 체류자격에 따른 일률적 보험료 경감제도만 이 있을 뿐 장애인, 노인,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이주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유지되었다.”

가입자에 대해서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외국국적동포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하고 체류기간 동안에만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점, 보험료 경감은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부담능력이 없음’이 전제되어야 하나⁷⁾ 외국인은 해외 자산 및 소득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으로, 이처럼 현재 내국인과 다르게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제도는 내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65세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으므로 65세 이상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경감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경감하여야 할 것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국적동포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둘째, 현행 대비 외국인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 확대 시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7)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해설 제5판(2024년), p.1073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사회적 취약계층 및 휴직 또는 실업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경감제도를 둔 것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국적동포 중 65세 이상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2025년 약 622억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이를 고려할 때 보험료 30% 경감 시 연간 약 187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음.
- 참고로, 2025년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외국국적동포인 지역가입자는 약 21만 7천명에 이르고, 그 중 65세 이상이 약 5만 4천명임.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취약계층 동포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은 공감하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첫째, 법률상 재외동포의 지위는 외국인이므로, 단순히 ‘동포’라는 혈연적 배경만으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 외국인 가입자와 차별화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
- 둘째, 외국인은 해외 자산 및 소득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따라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만으로는 정확한 부담능력을 측정하기 곤란해 내국인과 상이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 중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소득·재산 기준(고시)을 마련하거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현실적 한계가 있음.

- 셋째, 특정 집단에 한정한 보험료를 경감을 신설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유발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경감 신설이 아니라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재외동포청)에서 별도의 보험료 지원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국민건강보험공단

-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특정 체류코드(F-4)나 연령대에만 보험료 경감 기준을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첫째, 전체 외국인 가입자 169만 명 중 재외동포(F-4) 43만명의 일부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주면 다른 외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둘째, 세대경감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경감률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내국인과 달리 해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재외동포(F-4)와 같은 외국인에게 경감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공감을 얻기 어려움.
- 셋째,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 우려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특정 외국인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재정 부담을 키우고, 결국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큼.
- 따라서 외국인 중 일부 체류자격·연령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은 외국인 간 형평성, 내국인의 수용성, 재정적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재외동포(F-4)의 경우 체류기간의 상한이 3년으로 규정⁸⁾되어 있어 10년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허가가 필요한데, ‘국내에 체류한 기간 10년 이상’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연속하여 10년 이상의 기간을 체류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체류자격을 통한 체류 또는 체류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총 체류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

□ 대한의사협회

- 건강보험 재정은 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으로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보험료 경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은 전체 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균형을 전제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로써, 특정 집단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보험료 감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제도 취지 및 보험원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 최근 외국인 등이 단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한 보험료 수준보다 높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외국인의 경우 이미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의료 이용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까지 받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동 법안과 같이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 확대보다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우선해야 함.

8)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

- 따라서, 건강보험 제도의 기본 원칙인 형평성과 책임성,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보험료 경감 특례 신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재정 체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동 개정안에 반대함.

문 의 처
02)6788-5503